
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조례중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2004. 10. 30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4년 10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07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(2004. 10. 30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주민자치과장 김 종 선

가. 제안이유

주민등록법이 일부개정(2004.3.22 법률 제7201호) 시행됨에 따라 개정 주민등록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현행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“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”과 “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”을삭제함(안 제2조 제1호)
-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2조 제4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-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2004. 3. 22 법률 제7201호로 개정됨에 따라 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현행법령과 일치하지

않는 제2조제1호 및 제4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호의 규정은 과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시 주민등록증용지에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였으나 현재는 전산입력과 동시에 조폐공사로 관련자료가 전송되어 규정카드로 발급되므로 주민등록증용지를 관리 할 필요가 없어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주민등록증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려는 것이며, 안 제2조제4호의 규정은 구청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등·초본을 교부 할 수 있도록 2004. 3. 22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위임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

○ 질의요지(신봉현 위원) : 주민등록증이 용지에서 카드로 언제 바뀌었는가?

○ 답변요지(김종선 주민자치과장) : 마포구는 2000년에 완료되었음.

○ 질의요지(신봉현 위원) : 4년동안 주민등록 용지는 어떻게 관리하였는가?

○ 답변요지(김종선 주민자치과장) : 옛날 구중 백지용지는 소각하였음.

○ 질의요지(유용봉 위원) : 각동에 있는 금고는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는가?

○ 답변요지(김종선 주민자치과장) : 비밀문서 보관함으로 사용하고 있음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4.10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주민등록법이 일부개정(2004.3.22 법률 제7201) 시행됨에 따라 개정 주민등록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현행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"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1항"과 "주민등록증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"을 삭제함(안 제2조 제1호)
- 나.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·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제2조 제4호)

3. 개정근거

- (1)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
- (2) 주민등록법 제18조(2004.3.22 법률 제7201호)

4. 조례(안) : 따로붙임 참조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편성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나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협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
 - (1) 입법예고 : 2004. 9 .15 ~ 10. 5 (특이사항 없음)
 - (2)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
 - (3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..

1. 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권한의 위임) (생략)</p> <p>1. 법 제17조의8 및 주민등록시행령 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사항</p> <p>2.3 (생략)</p> <p>4.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, 영 제45조,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 등·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</p>	<p>제2조(권한의 위임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법 제17조의8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사항</p> <p>2.3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